

일립생활관 규정

제정 : 2000. 09. 01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자 : 일립생활관 (02-950-5512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관장, 부관장)	제4조(이용제한)
제5조(직제)	제6조(입주 및 퇴관기간)	제7조(입주자격)	제8조(선발기준)
제9조(입주제한)	제10조(임의퇴관)	제11조(퇴관명령)	제12조(생활규칙)
제13조(외출 및 외박)	제14조(생활관비)	제15조(입주자)	제16조
제17조	제18조	제19조	제20조
제21조	제22조(면회)	제23조(접호)	제24조(포상)
제25조(징계)			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일립 생활관생(이하 "관생"이라 한다)들의 신앙생활, 질서유지, 보건위생 및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, 공동생활을 통해 협동정신과 보수신앙에 입각한 인격훈련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관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)

제2조(명칭) 본 생활관은 한국성서대학교 일립생활관(이하 "생활관"이라 한다)이라 한다.(개정15.02.06)

제3조(관장, 부관장) 관장, 부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내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지침을 계획 실천하며 경건 예배 인도 및 관생 상담을 담당하고 관생들의 복리를 위해 노력한다.

제4조(이용제한) 생활관 시설이용은 관생에 한한다. 다만 그 사용 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목적과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2장 조 직

제5조(직제) 생활관에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둔다.

1. 관장과 부관장 각 1명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가. 입주 및 퇴관에 관한 사항
 - 나. 관생 지도 및 상, 벌에 관한 사항
 - 다. 운영위원회(장학 및 학생복지·지도위원회)에 부의 사항
 - 라.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
2. 남, 여 각 1인씩의 간사 및 총무를 두고, 각 호실에 방장을 둔다.

제3장 입주 및 퇴관

제6조(입주 및 퇴관기간) 매 학기 개강 일부터 종강 일까지로 한다. 단, 연장 수업 시는 해당 학년에 한하여 연장한다(퇴관 시 반드시 개인사물은 철수해야 하고 이에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).

제7조(입주자격)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로서 소정의 관비를 납부한 자

제8조(선발기준) 관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지방학생 저학년 우선 순으로 한다.
2. 학업 성적 우수자
3. 가정형편이 어려운자

제9조(입주제한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.

1.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
2. 생활관에서 퇴관 처벌을 받은 자
3. 음주, 흡연을 하는 자
4. 법정 전염병환자 및 단체 생활에 적합지 못한 질병보유자
5.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
6. 관장, 부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7. 휴학중인 자
8. 학사경고 받은 자
9. 관장, 부관장에게 3회 이상 경고 받은 자

제10조(입의퇴관) 퇴관을 원하는 관생은 소정의 퇴관원서를 퇴관 7일 이전에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.

제11조(퇴관명령) 관장, 부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면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.

1.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
2. 사내에서 흡연, 음주, 도박 및 폭행한 자

3. 정당한 이유나 사유서 없이 3회 이상 무단 외출, 외박한 자
4. 의사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
5. 교직원에게 예의를 벗어난 언어, 행동, 태도를 보이는 자
6. 허용되지 않는 전기기구를 반입한 자
7. 기타 관생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자

제4장 생활 규칙

제12조(생활규칙) ① 관생의 공동생활의 규율과 질서를 위해 (별표1)과 같이 생활 규칙을 두며, 이를 위반하는 상응하는 징벌이 따른다. 관내에서는 몸가짐과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.

제13조(외출 및 외박) ① 평일의 외박은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으며, 부득이한 경우 관장 또는 부관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② 공휴일 및 휴일의 외출, 외박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장 또는 부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(외출 - 외박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.)
- ③ 외출, 외박한 경우 정해진 시간까지 귀관해야 하며, 귀관하지 않는 경우 무단 외박으로 간주한다.
- ④ 외출, 외박 시는 귀관 후 반드시 관장, 부관장에게 귀관보고를 해야 한다.
- ⑤ 생활관 출입문은 오전 06:00에 열고, 오후 23:00에 닫는다.(개정15.02.06)

제14조(생활관비) 생활관비는 사용료로 받으며 납입된 관비는 반환할 수 없다. 학기도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대리 입주는 허락지 않는다.

제15조(입주자) 생활관 입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(생활관 입주원서)를 제출 후 호실 배정에 따라 입실할 수 있고 관장 또는 부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호실을 옮길 수 없다.

제16조 각 호실의 비품은 소정 장소로부터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.

제17조 관내에서는 취사행위, 전열기 및 버너 사용 등을 금한다.

제18조 관내의 기물을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 이를 변상해야 한다. 변상 원칙은 비품관리규정에 의한다.

제19조 호실 내에는 TV, 장기, 바둑 기타 오락 기구를 둘 수 없다.

제20조 관내에서는 절대 정숙해야 한다.

제21조 관내에서는 선후배 상호간의 신앙과 인격을 존중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 한다.

제22조(면회) ① 관생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관장, 부관장의 허락 없이 호실에서 외부인을 접견 하거나 숙식 또는 동숙할 수 없다.

② 면회시간은 평일(월-금) 09:00부터 17:00까지로 하고 휴일에는 제한하지 않는다.

제23조(점호) 관생의 점호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1. 일조점호 : 매일 아침 경건회(토, 일요일은 제외) 06:00시
2. 일석점호 : 매일 밤 23:00시(개정15.02.06)

제5장 상 벌

제24조(포상) 관장, 부관장은 생활관에서 공동생활이나 각종 행사에 모범을 보이는 자에게 표창 또는 추천할 수 있다.

제25조(징계) 관생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징계 한다

1. 경고
2. 근신(외출, 외박금지)
3. 퇴관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생활관에 입주한 관생과 관장, 부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관생 일일 생활 시간표

(별표 1)

관생 일일 생활 시간표

아침 경건회 및 조회(월-금)	6:00
아침 청소	7:00
취침점호	23:00
취침 및 소등	24:00